

대전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단120995 판결 [점유회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천용

피 고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대전 대덕구 F 답 2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7㎡에 관하여 하수 및 오수 시설을 위한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원고들이 위 토지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 시설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전 대덕구 F 답 2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7㎡에 관하여 수도, 하수 및 오수 시설을 위한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ㄴ’ 부분 9.7㎡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울타리 등을 철거하고, 원고들이 ‘ㄴ’ 부분 9.7㎡에 대하여 위 시설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1. 12. 30. 대전 대덕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원고 A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은 1998. 7. 27. 대전 대덕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원고 B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C은 2006. 9. 20. 대전 대덕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원고 C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D는 1971. 4. 29. 대전 대덕구 J 답 822.5㎡(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D는 J 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원고 D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 건물과 근접한 대전 대덕구 F 답 27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다.

나. 원고들은 본인 소유의 주택의 오수, 하수를 지하에 설치된 오수관을 통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기존 배수로’라 한다)에 있는 고랑을 거쳐 대전 대덕구 K 도로 516.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있는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경 실시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기존 배수로가 피고 토지 지상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기존 배수로에 있던 고랑을 흙으로 파묻어 원고들이 기존 배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라. 한편 J 토지, H 토지, I 토지 하단에는 오수관로(이하 ‘하단 오수관’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원고들은 기존 배수로가 폐쇄된 이후 배수펌프와 임시 배수관을 이용하여 오수 등을 배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형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기존 배수로를 통해 오수 등을 배수하여 왔고, 피고 토지 중 기존 배수로를 이용할 경우 자연배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수관 공사비도 2,542,376원이 소요됨에 반해 원고들 건물에서 하단 오수관까지 하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가 46,005,464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토지 경사도로 인해 자연배수가 불가능하며 원고 B 건물 중 일부의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토지 중 기존 배수로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오수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므로 기존 배수로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218조에 의한 수도, 하수 및 오수 시설권이 존재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들은 개별 토지,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원고별로 하단 오수관을 이용하여 하수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 A, C, D는 기존 배수로에 하수관을 설치하는 비용이나 하단 오수관과 연결하는 하수관을 설치하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 원고 B는 하단 오수관과 연결하는 하수관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인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시설권 확인 청구에 대하여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토지 중 기존 배수로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수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이를 시설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에 의해 피고 토지 중 기존 배수로에 대하여 하수 및 오수 시설을 위한 시설권이 있다.

가) 원고들이 피고 토지 중 기존 배수로에 하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 경사로 인해 자연배수가 가능하고, 필요한 하수관의 길이는 약 10m 정도이며 하수관 설치비용은 2,542,376원이 소요된다.

나) 그에 반해 원고들이 하단 오수관을 통해 이 사건 도로 지하에 있는 하수관까지 하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원고 B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고, 설치비용으로 46,005,464원(원고 A: 7,139,527원, 원고 B: 26,501,685원, 원고 C: 8,464,952원, 원고 D: 3,899,300원)이 소요된다.

다) 게다가 원고들이 하단 오수관을 이용하는 경우 토지의 경사도로 인하여 자연배수가 어렵고, 자연배수를 위하여는 이 사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더 낮게 매설하여야 하는데 이는 관할 관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도로에 있는 하수관로의 높이를 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일대에 있는 하수관로들의 높이까지도 함께 변경하여야 한다.

라) 기존 배수로로 이용되는 부지의 면적은 9.7㎡로 그리 넓지 않고, 그 위치도 피고 토지의 북측 면에 접해 있으며, 원고들은 기존 배수로 지하로 하수관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원고들이 기존 배수로에 대해 하수 및 오수 시설을 위한 시설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토지 이용에 큰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기존 배수로에 대하여 수도시설을 위한 시설권이 있음의 확인도 구하나, 원고들이 기존 배수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시설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가 원고들의 기존 배수로에 대한 오수 및 하수 시설권 유무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시설권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의 위 시설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들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1)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참조].

2)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기존 배수로 부분에 설치된 철제울타리의 철거를 구하나, 원고들은 기존 배수로 지하로 하수관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오수 및 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위 철제울타리의 존재가 원고들의 시설권 행사가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하수관 매립 이후 기존 배수로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철제울타리의 존재가 철거를 명할 정도로 원고들의 시설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별지